

의안번호	2212216
의 퇴 인	전종덕의원
회 답 일	2025.11.10.
추계번호	25C4442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의2 (운영지침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운영 지침에 반영하여야 함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(제2항) - 국가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조의2 (운영지침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운영지침(안 제21조의2)

-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자 함(안 제21조의2제3항)
 - 참고로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은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¹⁾

- 이 경우, 정부의 의료인력 충원 사업의 종류 또는 규모가 확대되어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추가 사업 수행의 여부와 범위, 사업 규모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합리적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현행 보건복지부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거점공공병원²⁾에 대학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를 파견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의 50%를 지원하는 “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”을 수행하고 있으며, 2025년 기준 80억원의 예산을 배정함
 -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“공공병원 필수의료(운영비) 지원” 사업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 인력 부족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신규 사업 시행 및 기존 사업 확대 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

1) 운영지침의 경우, 2016년 제정된 “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”을 따르고 있으며, 운영지침 개발 연구비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2013년 기준 3,950만원이 소요됨

2) 지방의료원, 적십자병원